

##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 1 조(목적)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 2 조(조직) 제1항중 “사무과와 직원”을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하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를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부산직할시 사하구 <u>의회사무과</u>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u>사무과</u>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과와 직원</u>(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u>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② <u>사무과장</u>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u>사무과장</u>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p>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u>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u></p>	<p>부산직할시 사하구 <u>의회사무국</u>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p> <p>제1조(목적) .....</p> <p>..... <u>사무국</u> .....</p> <p>.....</p> <p>제2조(목적) .....</p> <p>.....<u>사무국장</u>과 <u>직원</u>(..... .....) .....</p> <p>.....<u>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u>.....</p> <p>.....</p> <p>② <u>사무국장</u> .....</p> <p>.....</p> <p>② <u>사무국장</u> .....</p> <p>.....</p>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p> <p>.....<u>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u>.....</p> <p>.....</p> <p>.....</p>